

#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「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(표준안)의 내용 반영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(안 제4조제3항, 별표1)

- 표준안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기준 제시

나.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(안 제5조제2항)

- 비서나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공고생략 가능한 근거 마련

다. 도 공무원교육원에 개설된 기본·전문교육훈련과정의 교육이수 기회 부여(안 제8조의2)

-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과 동일하게 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 부여

라.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(안 제12조)

-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

마.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(안 제12조의2)

- 별정직공무원도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법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각호에 해당하는 자는”을 “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1급 내지 9급”을 “1급부터 9급까지”로, “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”를 “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비서관 및 비서

2.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(예 : 초빙하는 경우)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교육훈련) ① 군수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.

제9조 중 “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”을 “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3제2항 중 “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1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”를 “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시간제 근무) ①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 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(이하 “별정직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 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제4조(임용자격)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.  ④ 직급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구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을 준용한다.</p> <p>제5조(임용절차 등) 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-----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 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-----  ② -----  -----따른다.  ③ ----- 따라 -----</p> <p>제4조(임용자격) ① -----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-----  ② ----- 1급부터 9급까지 -----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.----- 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.  &lt;삭 제&gt;</p> <p>제5조(임용절차 등) ① 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</p>

<p>&lt;신 설&gt;</p>	<p>한다.</p> <p>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비서관 및 비서</li> <li>2.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(예 : 초빙하는 경우)</li> </ol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8조의2(교육훈련) ① 군수는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.</p>
<p>제9조(당연퇴직) 공무원이 <u>법 제31조 각호의</u>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.</p>	<p>제9조(당연퇴직) ----- <u>법 제31조</u>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-----</p>
<p>제10조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<u>의하여</u> 면직시킬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<u>제17조 내지 제24조의</u>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</li> <li>2. 직제·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<u>의하여</u> 폐직 또는 감원이 될 때</li> <li>3. (생략)</li> <li>4. <u>기타</u>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li> </ol>	<p>제10조(직권면직) ----- <u>다음 각 호</u> 의 어느 하나에 ----- <u>따라</u>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----- ----- <u>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</u> 따라 -----</li> <li>2. 직제·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<u>따라</u> 폐직 또는 감원이 될 때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<u>그 밖에</u> -----</li> </ol>
<p>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</p>	<p>제11조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-----</p>

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(생략)

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해당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3(휴직의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1조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제2항에 따라 -----  
-----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 
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(시간제 근무) ① 군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「지방계약직공무



	<p>원규정」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별표 1]

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
상당계급	임용 자격
3급상당 이상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4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5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</li> <li>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6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</li> <li>2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</li> <li>5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
상당계급	입 용 자 격
7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</li> <li>2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6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8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</li> <li>2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4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5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9급상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</li> <li>2.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</li> <li>3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</li> </ol>
<p>※ 비 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(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)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(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에는 법인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임용예정 직위가 비서, 비서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○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, 프리랜서,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.</li> </ul>	

# 관계법령 발취

## ⌘ 지방공무원법

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~② (생략)

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별정직공무원 :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~ 4.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## ⌘ 지방공무원법

제25조의3(근무시간의 단축 임용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## 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

제5조(교육훈련기관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 관할구역안의 시·군 및 자치구의 시장·군수 및 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.

## ⌘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31조의2(근무성적평정)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, 특별승급, 성과상여금 지급, 교육훈련,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